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10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호

변론 종결2024. 11. 19.

판결 선고2024. 12. 17.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21. 12. 15. 접수 제6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으로 인한 채무원금 합계 19,518,581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E는 2018. 9. 3. D을 상대로 위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4946), 2018. 9. 2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3. 4.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2021. 7. 14.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D의 모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2. 13. 사망하였다(배우자 G은 2001. 12. 25. 사망).

마.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피고 및 D 등 5명은 2019. 12. 13.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 12. 1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피보전권리가 된다.
-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 대한 채무 외에도 I에 대한 대출금 8,848,000원, J에 대한 대출금 1,090,000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면서 합의금을 받게 되었는데, 합의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동민

별지